##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(김호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590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:김호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경만선, 김인제, 김태호,

박기재, 성흠제, 우형찬, 이승미, 이영실, 이은주, 조상호 의워(10명)

### 1. 제안이유

○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1의2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사항 반영(별표 1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가목의 기준란 기호(·) 중 "5명"을 "3명"으로 하고, 같은 표에 다목의 기준란 기호(·)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.

- 1)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
- 2)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

별표 1 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표 주)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표 주)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표 주)제5호를 주)제4호로 한다.

2.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, 화장실, 계단,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,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면적을 합산할 수 있다.

- 1)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
- 2)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
[별표1]	[	[별표1]		
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(제4조 관	련)	자동차매매업 -	등록기준(제4조 관련)	
구 분 기 준		구 분	기 준	
가. 전시시설 연면적 하되, 매매업자 등이상이 같은 장소 서 공동으로 사업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매업자 각 등에게 적용하는 면 기준(660㎡)의 30센트 범위에서 왼할 수 있다.	명   이   장   어   면   면   기퍼	가. 전시시설 연면적	• <u>3명</u>	
나. 전시시설 (생 략) 의 구조(특별 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 에 한정한다)		나. 전시시설 의 구조(특별 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 에 한정한다)	(현행과 같음)	
다. 사무실 ● 사무실은 전시설과 붙어있거나은 건물에 위치하야 한다.	시 같 여	다. 사무실	•	

구 분	기 준
<u>라. 정비·성능</u> 점검 시설	•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·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마. 출구 및 입구	(생 략)

혀

했

### 주) 1. (생략)

 2.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 시설 중 <u>화장실, 계단, 복도</u>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.

- 3. (생략)
- 4. 정비·성능점검 시설은 주변

   미관, 소음 공해방지 등을

  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5. (생략)

### 개 정 안

기 준		
• <삭 제>		
(현행과 같음)		

#### 주) 1. (현행과 같음)

2 -----

----- 공용통로, 화장실, 계단,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 고 계산하되,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다. 1)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 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 이 가능한 경우 2)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 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

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4. (현행 제 5호와 같음)